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우형찬 의원 외 11명

나. 의안번호 : 제2849호

다. 제출일자 : 2021. 10. 15.

라. 회부일자 : 2021. 10. 20.

2. 제안사유

- 현행 조례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에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및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도 “자동차정비에 관련된 국가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 근거가 없어 정비요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실정임

- 따라서,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및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의 자격조건에 포함하여 인력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및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의 자격조건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5조제1항제2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기술훈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0. 25 ~ 2021. 11. 1
- 제출의견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 원안가결

- 차량 품질 향상으로 기능상 고장은 감소한 반면 사고 등으로 인한 차체(판금) 및 도장 수리 등의 정비수요가 늘고 있어 비엔진 분야의 기술인력 확보가 필요함
- 조례 개정을 통해 종합정비업의 정비인력 기준 3명 중 차체(판금) 및 도장 자격증 소지자 1명을 포함케 하여 자동차 외관 수리 수요에 대응하고 품질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에 동의함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기준을 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에는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 보수 도장기능사를 1명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자격증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우수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참고 : 조례개정 전·후 확보인력 비교

구분	자격기준 확보인원		
	종합정비업	소형·원동기 정비업	전문 정비업
현황	3인 이상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2인 이상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1인 이상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개정 조례안	2인(정비책임자 포함)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1인 이상 자동차차체수리·자동차보수도 장기능사 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¹⁾에서는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정비작업의 범위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2)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을 조례³⁾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할 때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정비업의 종류에 따라 최소 1~3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②제1항에 따라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2)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 3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 2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 1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 참고 : 자동차정비 업종별 정비요원 확보 기준(동 조례 근거)

구 분	종합정비업		소형·원동기 정비업		전문 정비업		비고
	15명 이하	16명 이상	10명 이하	11명 이상	5명 이하	6명 이상	
인력기준	3명 이상	5분의 1이상	2명 이상	5분의 1이상	1명 이상	5분의 1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

- 다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⁴⁾에 따르면 자동차 중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은 자동차정비 외에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차체수리’, ‘그린전동자동차’ 등이 있음에도 현행 조례에서는 “자동차정비”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만 정비요원으로 인정함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 운영시설은 자격증을 소지한 정비사가 부족하여 현장의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자동차 차체수리 및 보수도장 기능사는 '20년 기준 서울 지역에 약 49백여명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업 등록기준의

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 관련)

직무 분야	중직무 분야	기술·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16 기계	166 자동차(8)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차량				자동차차체수리
				그린전동자동차		

5) 자동차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2020년 기준)

구 분	자동차정비(검사포함)								자동차 보수도장기능사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		비고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2015년 이전	555	2,872	1,777	10,840	7,705	64,281	64,268	436,293	1,534	6,835	1,759	9,599	
2016	11	103	16	83	136	906	1,325	8,632	278	1,065	153	937	
2017	13	106	26	134	185	1,312	1,268	8,082	205	1,214	123	972	
2018	10	91	15	93	180	1,377	1,003	7,416	258	1,084	128	1,020	
2019	11	43	24	97	193	1,303	888	6,799	249	1,242	138	997	
2020	4	58	5	18	69	550	354	2,425	40	263	45	403	
합계	604	3,273	1,863	11,265	8,468	69,729	69,106	469,647	2,564	11,703	2,346	13,928	

인원수 산정에 제외되어 차체수리 및 보수도장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기피됨에 따라

정작 차체보수 및 보수도장 업무는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이 아닌 기존 자동차 정비요원이 수행하게 되는 현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임⁶⁾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소형·원동기 정비업’ 및 ‘전문 정비업’은 현행과 같이 하되 3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두어야 하는 ‘종합 정비업’의 경우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 1명을 ‘자동차차체수리 기능사’ 및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로 둘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책임자와 직무대행자를 포함한 최소한의 인력⁷⁾은 안전분야인 “자동차정비” 인력으로 우선 확보 하되 추가인력에 대해서는 “차체수리 및 보수도장” 자격인력을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포함함으로써 차체수리, 보수도장을 위한 우수인력 확보와 정비업계의 운영 현실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20.08월 기준 단위 : 명)

6) 교통신문 보도자료, 「[칼럼]자동차차체수리 및 보수도장 무자격자가 하고 있다」, 2019.12.22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6조(정비책임자의 직무등) ①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② 정비업자는 정비책임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비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즉시 제1항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